

대구지방법원 2023. 4. 12 선고 2022가단120012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산우

담당변호사 김잔디, 김현석, 이서연, 임부혁, 임정혁, 정세윤, 정주영

피고B

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C, 모 D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3. 4. 1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경산시 E 임야 5,157m'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21. 1. 7. 접수 제7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1)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

판사김지나

별지

1) 원고는 소장에서 'F'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'G'으로 직권으로 정정한다.